

서울특별시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공기업팀

공정무역 홍보관 운영 관련 출장 보고서



2016. 04.

해 외 사 업 처

공정무역 홍보관 운영 관련 출장 보고서

(해외 사업처)

I 회의 주제 및 개요

가. 일 시 : 2016. 04. 07(목) 15:00~17:00

나. 장 소 : 서울특별시 기획조정실 공사공단팀 (서울시 신청사 8층)

다. 참석자 : ① 도시철도공사 김남욱 부장 외 1명

② 서울시 공사공단팀장 이정미 팀장 외 1명

라. 회의주제: 공정무역 관련 공정무역홍보관 직영운영에 대한 질의

-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공정무역홍보관 운영관련 공사의 사업범위문의
- 공정무역 홍보관 운영에 대한 서울시의 의견 청취

II 질의응답 및 답변

서울시Q1)

공정무역홍보관을 왜 운영하시려 합니까? 서울시 청사 지하 1층에 지구마을(공정무역관)을 위탁운영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영운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정무역홍보관을 직영운영 하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시철도공사 A) 공정무역기구(FIKOREA)로부터 공사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공정무역 사업에 관한참여 요청을 받았습니다. 공정무역 홍보관 운영에 대한 검토한 결과 공익 및 사업적 측면에서 직영운영이 최대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판단 하여, 사업 진행의 방향을 직영에 초점을 두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시Q2)

서울시에 왜 도시철도 사업범위에 대하여 질의 하였는지요?

도시철도공사 A) 공정무역홍보관 도시철도 직영운영에 대한 법률적 문제관한 검토 사항 중 도시철도 사업 범위에 해당되는지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 질의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도시철도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3장(사업)21조(사업의 범위)에 해당 되는지 문의 하였습니다.

도시철도공사 Q1)

공정무역홍보관 운영이 도시철도공사의 사업범위에 해당 되는지요?

서울시 A) 공사의 사업범위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직접적인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공사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시 공사 및 자치구 공사 들이 경영개선을 이유로 여러 가지 사업을 기획하여 공사와 같이 문의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의 공기업과 「지방공기업 민간경제 위축 기능감축 관련 시장성 테스트」 지침에 따라서, 행정 자치부에서 불허하고 있습니다. 만약 공사가 직접운영을 하는 경우, 공사의 경쟁에 불이익을 받고, 해당사업을 영위 할 수 없습니다

도시철도공사 Q2)

도시철도공사에서 공정무역홍보관 운영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나요?

서울시 A) 공정무역에 관하여 직접 운영 방법 이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공사가 만약, 공정무역사업을 한다면, 서울시처럼, 장소를 무상, 유상으로 제공하면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도시철도 사업범위에도 부합하며, 민간이양 대상사업에도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III 결론

- 서울시 기획조정실 공기업팀에서는 도시철도공사의 공정무역 홍보관 직영운영에 관하여, 공사의 사업범위가 아니며, 공사의 직영운영에는 회의적임.
- 서울시에서 사업범위에 대하여 판단하여도,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위배되어, 공사의 직영운영을 할 수 없을 것 이라 판단됨
- 공사의 공정무역에 관련 사업범위를 임대로 할 것을 추천함